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29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9년 3월 4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29호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확정 열람공고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53호 2019년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 37

○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공고 제2019-1호 유물 구입 공고 ····· 41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56호 회계직인 신규 등록 및 폐기 공고 ····· 45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15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4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재난예방과(☎032-440-3362), 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4-3, 66-98, 66-10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

【명칭】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914.5㎡(기존 도로면적 포함)

○ 사업규모

- 저류시설 V= 6,688㎥ [664-3 : 2,790㎥, 66-98외1 : 3,898㎥]
- 펌프시설 : 222㎥/min×3대(예비 1대 포함)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9. 2. 28.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총 계			3,907.5	3,907.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4-3	공	2,275.5	2,27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8	잡	680	680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03	잡	952	952		

7.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29호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확정 열람공고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에 대하여 확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열람내용**: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2. **주요 변경내용**
   가. 목표연도: 2025년(변경없음)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경제자유구역, 옹진군 제외)(변경없음)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변경)

구분	기 정 (2016.6월)	변 경	변경사유
활성화 지 역	12개소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4개소, 일반형 7개소)	19개소 (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기자형 4개소, 일반근린형 6개소, 주거지지원형 8개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지역 반영 ·2019년도 활성화계획수립 예정 지역 반영 등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032-440-4503) 및 해당 군·구 도시재생 관련부서
5.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놓음(생략). 끝.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1. 개요

■ 배경 및 목적

· 기존 계획의 재검토와 인천시의 여건변화,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의 추진기반 마련

· 인천시 여건변화에 따른 쇠퇴진단 재검토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변경),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전략계획에 담고자 함

* 급격한 정책변화(2019년 도시재생뉴딜공모) : 2019년도부터 선도지역 방식을 원칙적으로 배제 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변경(신규지정)이 필요함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범위(변경없음)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도시지역(경제자유구역, 옹진군 제외)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10년 단위 계획)

■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경위

· 2016년 06월 :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확정·공고(인천시 최초의 도시재생전략계획)

· 2017년 12월 : 20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3개소) *우리동네살리기(2개소) 제외

· 2018년 08월 :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4개소) *우리동네살리기(1개소) 제외

· 2018년 09월 ~ 10월 : 군·구 사전수요조사 실시

· 2018년 10월 : 인천원도심균형발전계획 워크숍 실시(2회)

· 2018년 11월 : 군·구 및 공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 2018년 12월 : 군·구 자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실시

· 2019년 01월 : 시민공청회 개최
관련기관(부서) 협의(~2/8)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청취(원안 가결)

· 2019년 02월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원안 수용)

■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정 (2016.6월)	변경	변경사유
개요	계획의 배경		도시재생 패러다임 전환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여건변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행
	계획의 목적		도시재생 비전 및 전략 설정 등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에 대한 대응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방식 변화
여건변화	기초현황의 변화		· 2015년 인천통계연보	· 2017년 인천통계연보 · 상위 및 관련계획 등 반영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여건변화
	법적 쇠퇴기준	읍면동	전체 131개 중 83개 해당	전체 148개 중 105개 해당	
		집계구	전체 4,559개 중 2,852개 해당	전체 5,807개 중 1,908개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변경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형, 일반형	· 도시경제기반형 : 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반영 (국토부, 2018.12월)
	선정방식		인천시 도시재생 도입기 단계로 평가에 의한 선정방식	사전수요조사, 군·구 현장간담회, 현장검증 등을 통한 자발적 선정방식	인천시 도시재생의 정착기 단계로 군·구가 원하는 지역을 선정
	활성화지역		12개소 (도시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4개소, 일반형 7개소)	19개소 (경제기반형 1개소, 중심시가지형 4개소, 일반근린형 6개소, 주거지지원형 8개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지역 반영 · 2019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지역 반영 등
실행주체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정책관 체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	조직개편 반영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공기업위탁형 제안	공기업위탁형(인천도시공사) 운영	현재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음
재원조달	도시재생유형	경제기반형	국비 250억원(6년) (총 500억원)	변경없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반영 (국토부, 2018.12월) *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 (50 : 50)
		중심시가지형	국비 100억원(5년) (총 200억원)	국비 150억원(5년) (총 300억원)	
		일반근린형	국비 50억원(5년) (총 100억원)	국비 100억원(4년) (총 200억원)	
		주거지지원형			
	지방비 확보방안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영 예정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운영	2017.12.4. 조례 공포

2.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의 주요내용

2.1. 여건변화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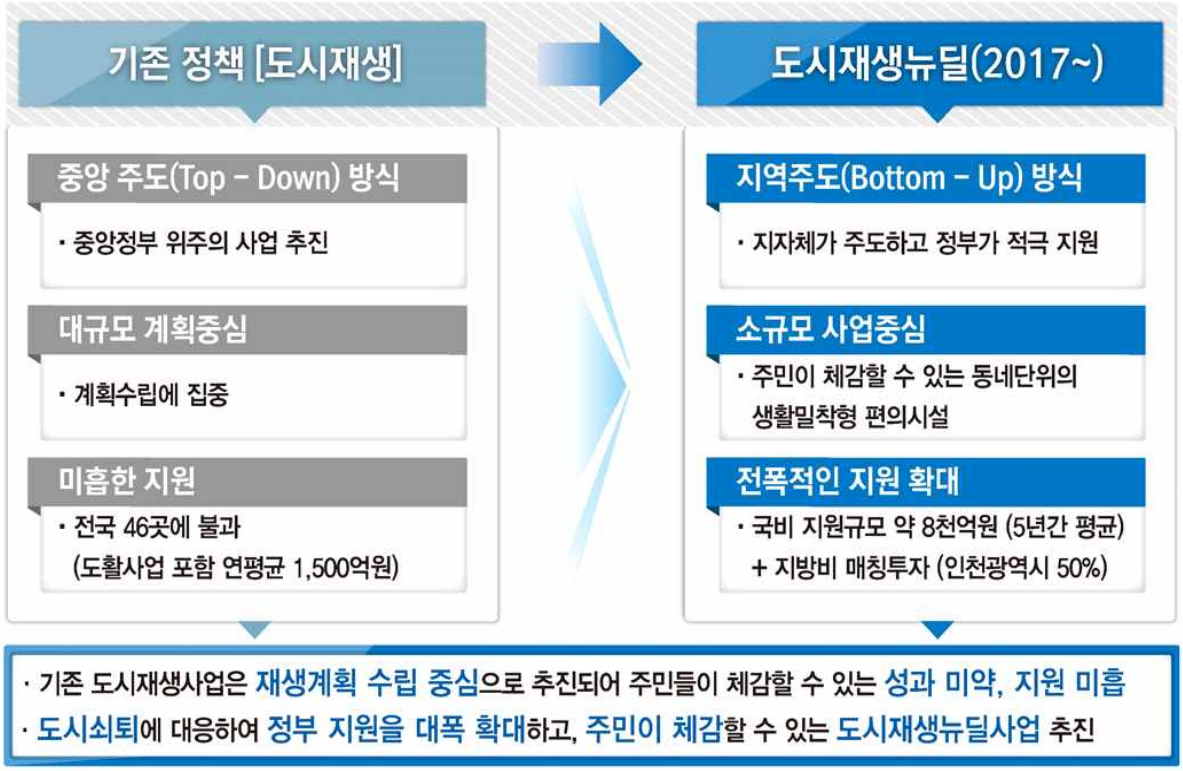

■ 도시재생뉴딜 공모방식의 변화

· 2017년 정권 변화에 따른 핵심정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진행하기 시작함

· 2017년, 2018년 도시재생뉴딜 공모방식은 도시재생선도지역 방식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

·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방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선정하는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 도입
(단, 공공기관 제안형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만 예외적 허용)

■ 인천시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의 변화

· 2016년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천시 전역의 쇠퇴지역 및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추가지정이 필요함

– 당초 도시재생전략계획 : 인천 전체 131개 읍면동 중 83개동 해당(63.4%)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 인천 전체 148개 읍면동 중 105개동 해당(70.9%)

구분		당초	변경
읍면동 기준	전체	131개소	148개소(증 17개소)
	법적 쇠퇴지역	83개소	105개소(증 22개소)
집계구 기준	전체	4,559개소	5,807개소(증 1,248개소)
	법적 쇠퇴지역	2,852개소	1,908개소(감 944개소)

구분	당초	변경
읍면동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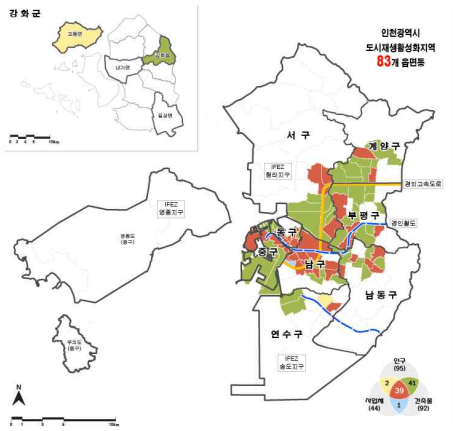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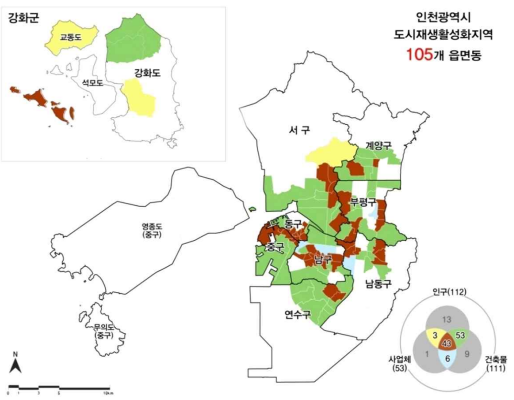
집계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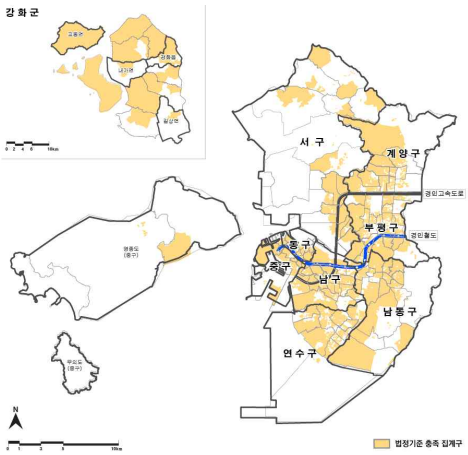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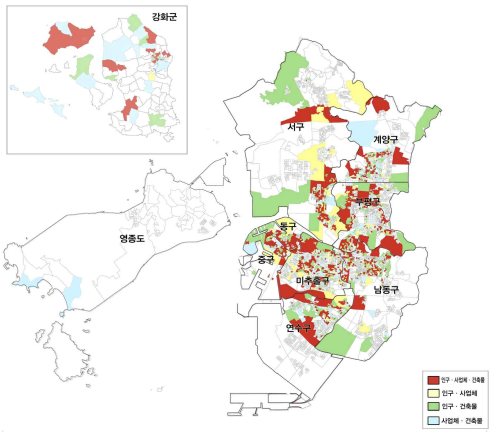

■ 기본방향

·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종합적인 활성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계획 및 사업에 참여하고,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 지역고유의 문화자산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인천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①정주성을 강조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삶터 재생, ②전략산업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경제기반구축을 통한 일터 재생, ③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쉼터 재생으로 문화성 회복, ④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로 지역성 강조

■ 인천도시재생의 비전

· 인천도시재생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천가치 재창조"로써 주민이 주도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의 사람중심과 인천의 지역 가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인천도시재생의 추진전략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추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일반형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지역에 대한 단계적 추가 지정 추진

· "지역별 복합적 연계 재생추진"을 위해 재생권역(중·동·남구, 부평, 강화), 재생유도권역(연수구·남동구·계양구·서구)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재생방향을 제시하고,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축을 설정하여 재생사업의 연계와 파급 추진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확보"를 위해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 등 단계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실행조직 및 지역역량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함

2.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기본방향

· 군·구 최종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준비된 지역을 선정

· 도시재생 정착기에 들어선 인천의 자율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모델 구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의 변화

· 법적 쇠퇴기준(인구, 사업체, 노후건축물) 분석을 통한 만족 여부 검토

· 사전 수요조사 실시와 군·구 및 공기업 현장간담회, 군·구 자체적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등 군·구의 자별적 선정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군·구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

■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정지역 사업계획서 9개소 선정

· 시본청 2개소, 미추홀구 2개소, 연수구 2개소, 남동구 1개소, 서구 1개소, 인천도시공사 1개소 제출하였으며,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당초 인천도시재생활성화지역(1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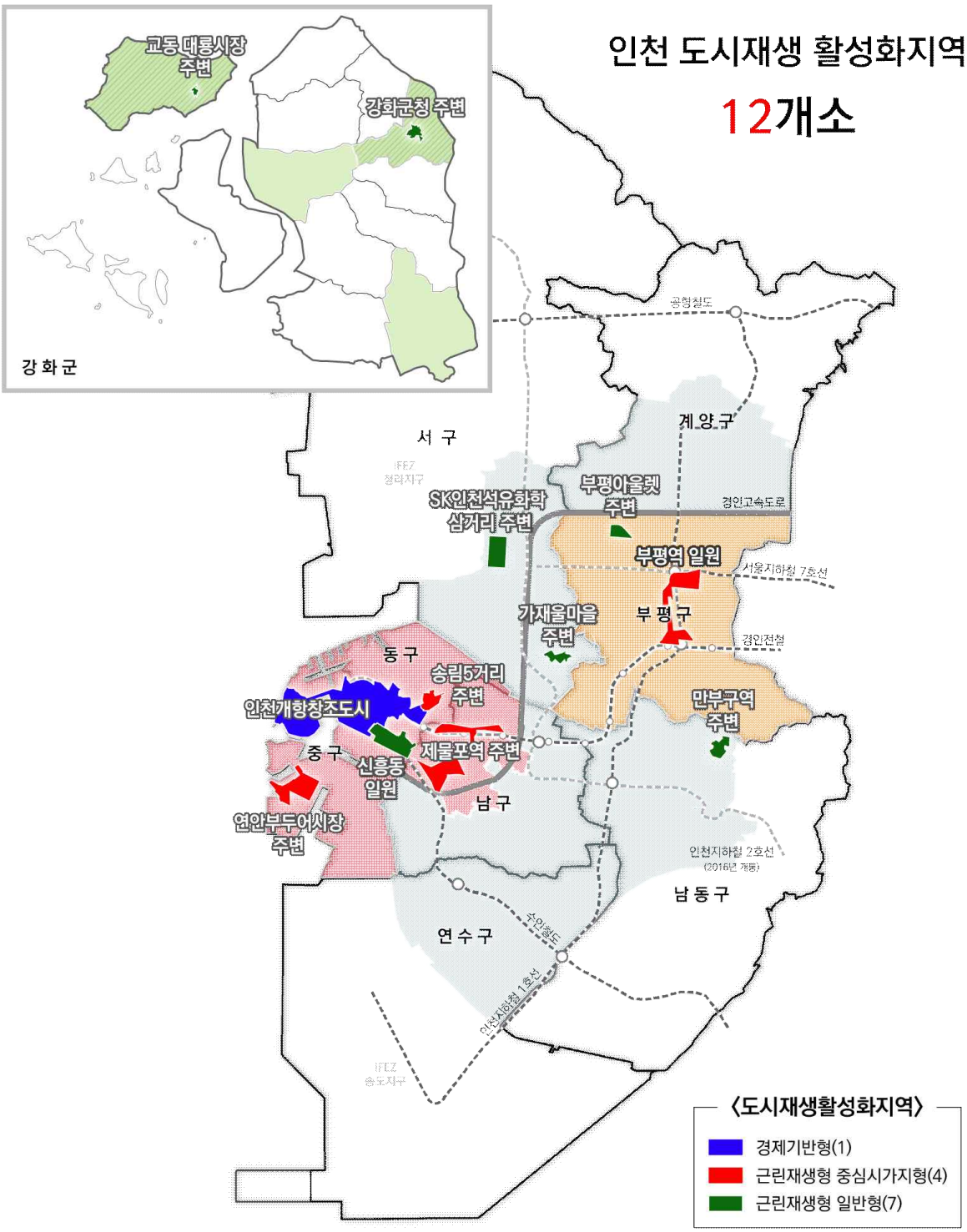

■ 인천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안)(19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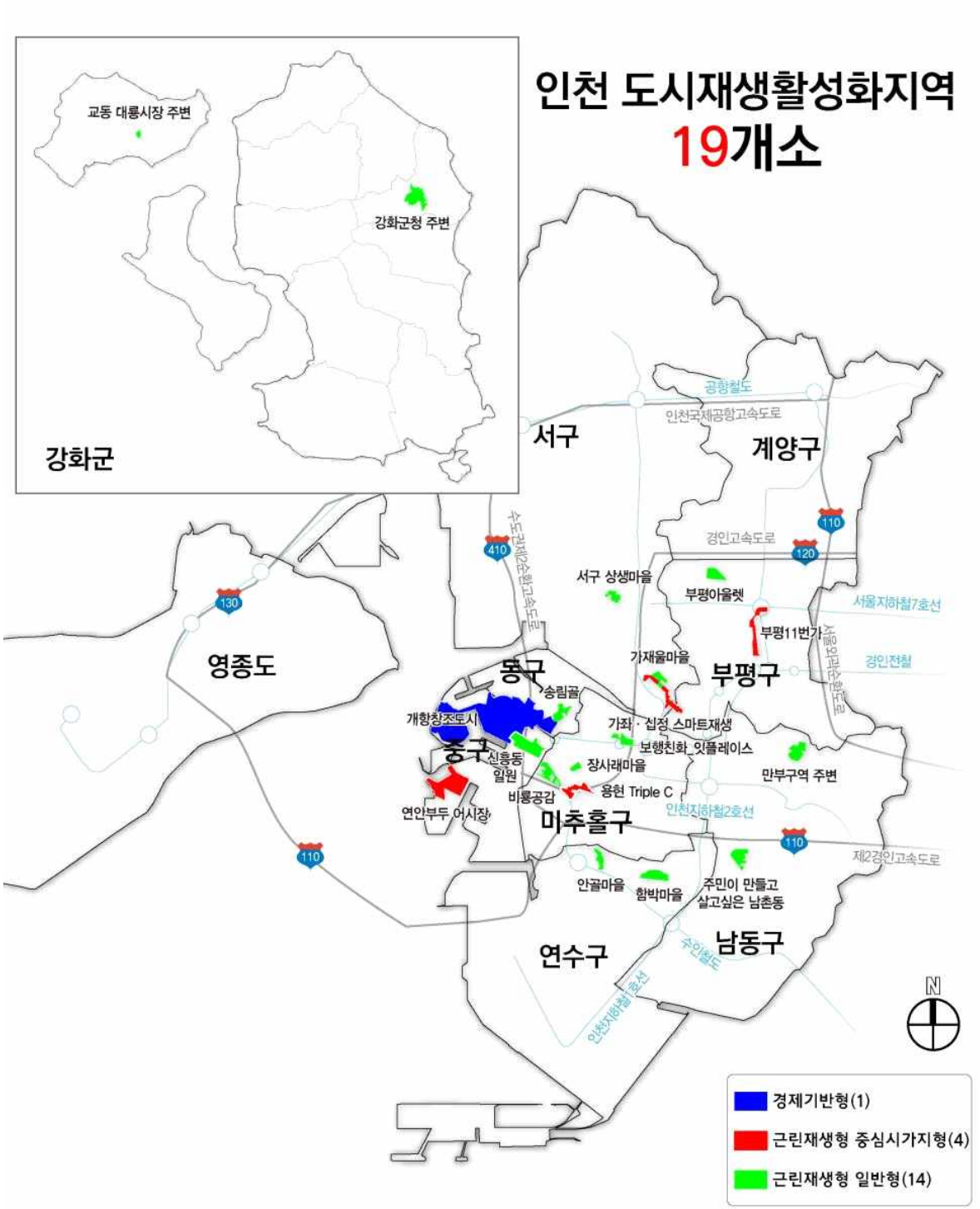

※ 활성화지역 지정 총괄표

번호	유형	세부유형	군·구	활성화지역명	규모	비고
A1 (변경없음)	도시경제 기반형	노후항만 재생형	중구	인천개항창조도시	3.9㎢	2016년 국토부 공모 선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73호)
B1 (변경없음)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중심시가지형	중구	연안부두어시장	699,000㎡	2020년 이후 추진예정
B2 (변경)		중심시가지형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226,795㎡	2017년 국토부 공모 선정 (부평구 고시 제2018-81호)
B3 (신규)		중심시가지형	미추홀구	용현 Triple C	274,085㎡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B4 (신규)		중심시가지형	서구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재생	210,686㎡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B5 (폐지)		중심시가지형	남구	제물포역 주변	905,000㎡	-
C1 (변경)	근린재생형 일반형	일반근린형 (공동체활성화형)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149,413㎡	2017년 국토부 공모 선정 (동구 고시 제2018-46호)
C2 (신규)		일반근린형 (지역자원활용형)	미추홀구	다시날자! "비룡공감 2080"	168,708㎡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C3 (신규)		일반근린형 (공동체활성화형)	연수구	함박마을	227,284㎡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C4 (신규)		일반근린형 (공동체활성화형)	남동구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215,853㎡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C5 (변경없음)		일반근린형 (근린상가활성화형)	부평구	부평아울렛 주변	174,000㎡	2020년 이후 추진예정
C6 (변경없음)		일반근린형 (지역자원활용형)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1.01㎢	2016년 국토부 공모 선정 (강화군 고시 제2017-57호)
D1 (변경없음)		주거지지원형 (지역자원활용형)	중구	신흥동 일원	621,000㎡	대상지 일부 2018년 국토부 공모 선정
D2 (신규)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미추홀구	보행친화 마을_잇플레이스	134,822㎡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3 (신규)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미추홀구	장사래마을	57,459㎡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4 (신규)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연수구	안골마을	105,849㎡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5 (변경없음)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235,000㎡	2020년 이후 추진예정
D6 (변경)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99,719㎡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7 (변경)		주거지지원형 (공동체활성화형)	서구	서구 상생마을	100,000㎡	2017년 국토부 공모 선정 (서구 고시 제110호)
D8 (변경없음)		주거지지원형 (지역자원활용형)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 주변	78,000㎡	2020년 이후 추진예정

※ 활성화지역 변경내역

번호	유형	활성화지역명	면적	변경사유
B2 (변경)	중심시가지형	부평역 일원	1,029,000㎡	활성화계획 고시 반영 (부평구 고시 제2018-81호, 2018.09.17.)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226,795㎡	
B3 (신규)	중심시가지형	용현 Triple C	274,085㎡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B4 (신규)	중심시가지형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재생	210,686㎡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B5 (폐지)	중심시가지형	제물포역 주변	905,000㎡	대규모로 사업추진 어려움
			-	
C1 (변경)	중심시가지형	송림5거리 주변	232,000㎡	활성화계획 고시 반영 (동구 고시 제2018-46호, 2018.09.10.)
	일반근린형(공동체활성화형)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149,413㎡	
C2 (신규)	일반근린형(지역자원활용형)	다시날자! "비룡공감 2080"	168,708㎡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C3 (신규)	일반근린형(공동체활성화형)	함박마을	227,284㎡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C4 (신규)	일반근린형(공동체활성화형)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215,853㎡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2 (신규)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보행친화마을 잇플레이스	134,822㎡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3 (신규)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장사래마을	57,459㎡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4 (신규)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안골마을	105,849㎡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D6 (변경)	공동체활성화형	가재울마을 주변	167,000㎡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예정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99,719㎡	
D7 (변경)	근린상가활성화형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475,000㎡	활성화계획 고시 반영 (서구 고시 제110호, 2018.08.20.)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100,000㎡	

B2.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변경)

유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부평구 갈산2동, 부평1동, 부평4동
규모	226,795㎡
추진경과	· 2017년 선도지역 선정사업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2018-81호(2018.09.17.) ·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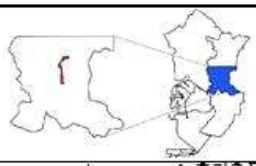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갈산2동	O	-30.0	O	X	-2.9	X	O	90.5
부평1동	X	-2.8	1.0	X	-0.7	X	O	60.0
부평4동	X	14.4	X	X	-2.8	X	O	68.2

※ 집계구 기준 법적기준 충족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갈산2동	-14.7	11.0	74.1	14.7	-	-
부평1동	-0.8	11.2	74.0	14.9	4.1	7.0
부평4동	39.9	9.9	74.8	13.2	5.2	3.7

구분	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갈산2동	-1.1	-65.0	-0.7	-24.2	-1.0	4
부평1동	16.8	-43.8	-8.8	18.9	7.4	5
부평4동	16.0	-27.0	-24.4	12.3	129.9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5.3% (5,613명 → 5,909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4.2% (1,117개소 → 1,164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41.4% (건축물 1,285개 중 532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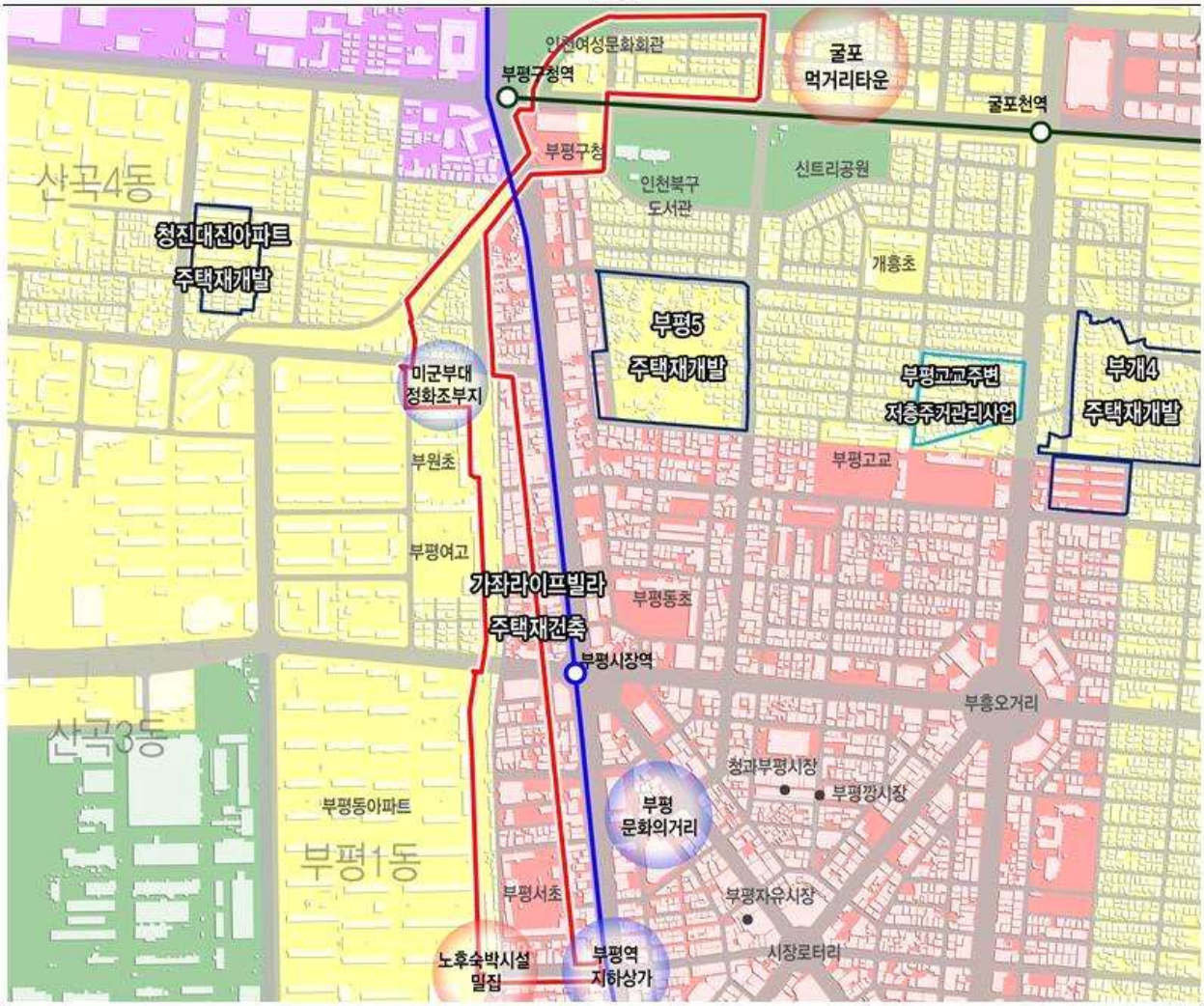

재생방향	**문화·생태·기존상권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평구 경제 생태계 구축** · 기존상권 및 높은 청년인구를 활용한 창조상권 및 관광상권 조성 · 대중음악, 문화예술 콘텐츠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상적 문화산업 기반 구축 · 굴포천 복원 및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생태환경 조성

B3. 용현 Triple C(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미추홀구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용현1·4동
규모	274,085㎡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미추홀구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용현2동	O	-58.2	O	O	-30.5	O	O	93.7
	용현3동	O	-53.3	O	O	-25.6	O	O	88.1
	용현5동	X	-6.6	X	X	-1.8	X	O	54.3
	용현1·4동	X	-3.7	O	O	-11.7	X	O	72.0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용현2동	-12.2	13.1	70.9	18.3	12.3	16.1
	용현3동	-20.4	20.6	70.1	29.3	36.4	0.9
	용현5동	-5.7	10.7	73.5	14.5	6.7	7.7
	용현1·4동	-10.8	14.0	90.2	19.1	30.9	5.3
	구분	종사자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용현2동	16.1	25.0	-21.5	-8.5	-33.3	5
	용현3동	1.4	-9.5	-20.6	-13.6	-10.6	4
	용현5동	-6.0	-91.0	9.9	21.7	-10.4	4
	용현1·4동	30.1	-56.2	3.5	28.8	60.0	6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33.21% (5,469명 → 3,653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6.8% (293개소 → 313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36.9%(건축물 1,880개 중 694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대학과 연계한 청년창업의 혁신 거점 "Triple C"
	· 인하대학교 중심의 청춘가로 조성 · 지역내 다양한 문화활동과 문화컨텐츠 창업을 위한 문화플랫폼 조성 · 인천대로 중앙공원(Festival Green) 조성

B4.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재생(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부평구 십정1동, 서구 가좌2동,가좌3동, 가좌4동
규모	210,686㎡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서구
부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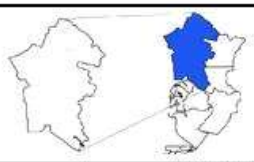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십정1동	O	-30.0	O	X	-2.9	X	O	90.5
가좌2동	X	-2.6	1.0	X	-0.7	X	O	60.0
가좌3동	X	14.4	X	X	-2.8	X	O	68.2
가좌4동	O	-58.2	O	O	-14.5	X	O	79.2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십정1동	-8.7	12.8	74.0	17.8	26.3	3.3
가좌2동	30.4	8.5	74.3	11.1	20.4	0.2
가좌3동	-17.6	11.8	76.0	15.6	30.7	0.3
가좌4동	-36.5	12.8	76.4	17.1	36.0	-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십정1동	14.0	7.3	25.2	9.6	4.6	4
가좌2동	69.2	42.5	37.4	120.7	-2.2	5
가좌3동	16.2	2.9	17.8	20.0	-8.9	4
가좌4동	33.9	39.4	54.6	13.7	-34.2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21.7% (7,766명 → 6,081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 1.2% (1,764개소 → 1,785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82.9% (건축물 551개 중 457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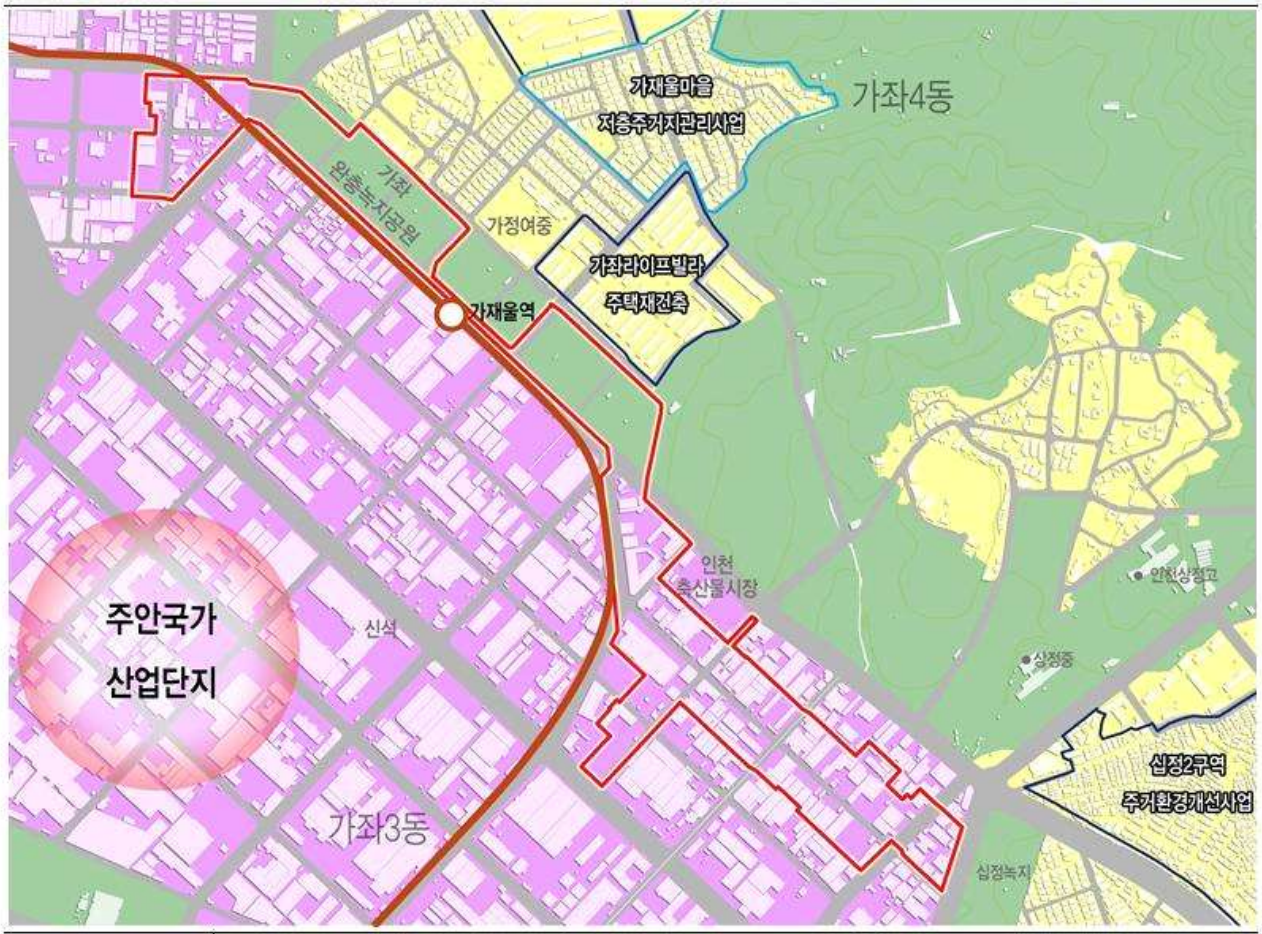

재생방향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매력있는 도시공간 조성**
	· 상권활성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력 회복 · 영상·문화·예술의 거점공간 및 거리조성 · 신재생에너지와 CPTED디자인 등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 지속가능한 재생, 자생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B5. 제물포역 주변(폐지)

유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행정구역	미추홀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도화1동, 도화2·3동, 용현2동, 용현3동
규모	약 905,000㎡
추진경과	대규모 지정에 의한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폐지

미추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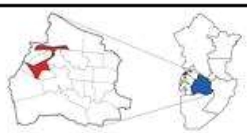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구분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숭의1·3동	O	-59.3	O	O	-10.7	X	O	84.6
숭의2동	O	-38.3	X	O	-5.2	X	O	65.3
숭의4동	O	-20.4	X	O	-18.2	X	O	73.0
도화1동	X	-17.8	O	O	-6.4	X	O	77.8
도화2·3동	O	-36.3	O	O	-7.4	X	O	72.4
용현2동	X	-12.7	X	O	-20.9	X	O	79.1
용현3동	O	-48.0	O	O	-19.1	X	O	80.1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숭의1·3동	-5.9	28.6	4.4	32.5	84.6	36
숭의4동	-6.6	21.8	12.2	36.5	73	55.3
용현3동	-19.0	30.3	15.8	38.7	80.1	62.7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숭의1·3동	-3	-1.1	9.6	8.9	710	210
숭의4동	-0.8	38.8	-29.4	0.8	196	79
용현3동	-2.3	-19.2	-5.5	-9.5	65	156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 6.4% (24,756명 → 23,161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20.9% (2,360개소 → 1,867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80.8% (건축물 2,548개 중 2,058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JST 및 대학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공간 육성
	·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연계한 신산업(디자인, 콘텐츠 산업) 유치를 통한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 주변 각종 지원기능(대학과 유관기관)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공간(캠퍼스타운 조성) · 주인선 폐선(주인공원)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재생

C1.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변경)

유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일반근린형 : 공동체활성화형)
행정구역	동구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규모	149,413㎡
추진경과	· 2017년 선도지역 선정사업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46호(2018.09.10.) ·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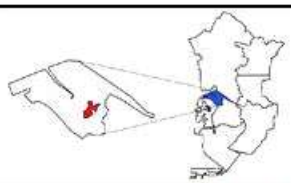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송림2동	O	-64.1	O	O	-16.6	O	O	91.7
	송림3·5동	X	-14.9	O	O	-19.3	O	O	81.9
	송림6동	O	-47.9	O	O	-13.7	X	O	82.4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송림2동	-19.9	26.0	65.2	39.5	68.0	-
	송림3·5동	67.5	14.9	66.8	22.1	25.6	0.5
	송림6동	-0.8	15.9	67.7	22.7	31.5	1.4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송림2동	38.1	-21.7	-16.8	-27.8	-63.0	3
	송림3·5동	17.2	-11.4	-11.3	13.7	91.6	3
	송림6동	21.1	21.1	-25.6	-1.4	28.1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18.9% (7,193명 → 5,833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19.2% (1,046개소 → 845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91.0% (건축물 1,207개 중 1,098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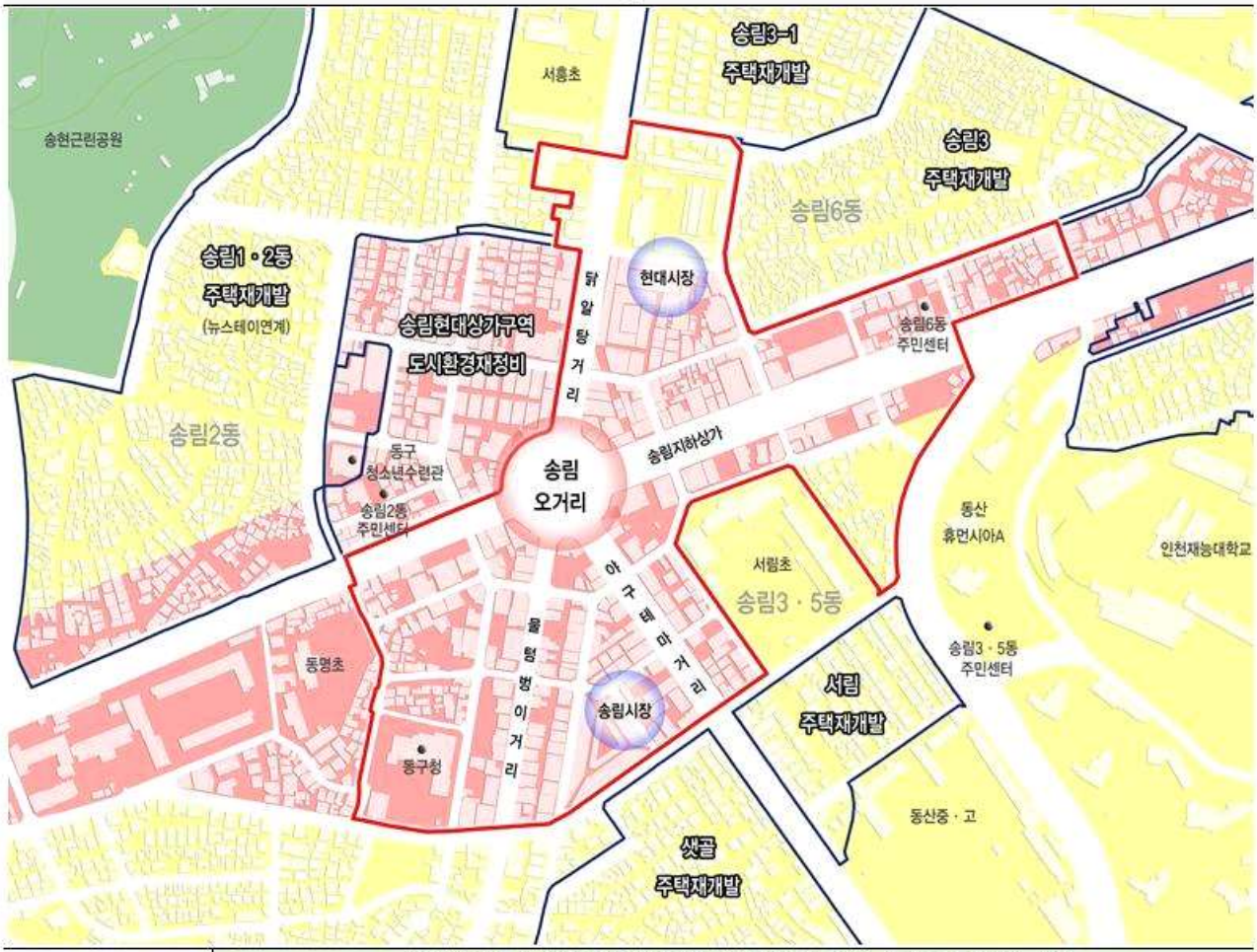

재생방향	지역공동체 및 지역상권 활성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통한 재생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맞춤형 역량강화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역자원의 연계와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가족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 ·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특화 먹거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 공간 창출

C2. 다시날자! "비룡공감 2080"(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일반근린형 : 지역자원활용형)
행정구역	미추홀구 용현2동
규모	168,708㎡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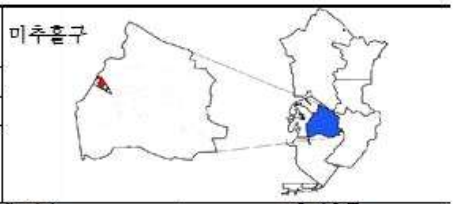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용현2동	O	-58.2	O	O	-30.5	O	O	63.7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용현2동	-12.2	13.1	70.9	18.3	12.3	16.1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용현2동	16.1	25.0	-21.5	-8.5	-33.3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18.1% (4,607명 → 5,443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15.6% (230개소 → 268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35.6% (건축물 1,726개 중 615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폐선로(도시숲 조성)·폐창고를 활용한 창조적 재생과 공동체중심의 주거지재생**
	· 지역자산을 활용한 보행환경 및 주거 환경 개선 · 지역문화활동 증대 및 편의를 위한 공공공간 개선 노후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활력 회복 · 숭의역세권 활성화 및 인하대 등의 젊은계층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문화·창업시설 도입 · 주변 공동주택 주민과의 갈등요소 제거 및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C3. 함박마을(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공동체 활성화형)								
행정구역	연수구 연수1동								
규모	227,284㎡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연수1동	O	-23.7	O	O	-6.3	X	O	81.9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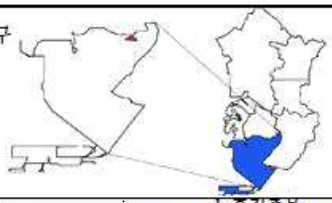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연수1동	-12.5	7.8	80.8	10.4	0.2	-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연수1동	1.9	-12.7	-11.0	-	-20.8	10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22.9% (11,206명 → 8,645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9.7% (331개소 → 299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85.9% (건축물 533개 중 458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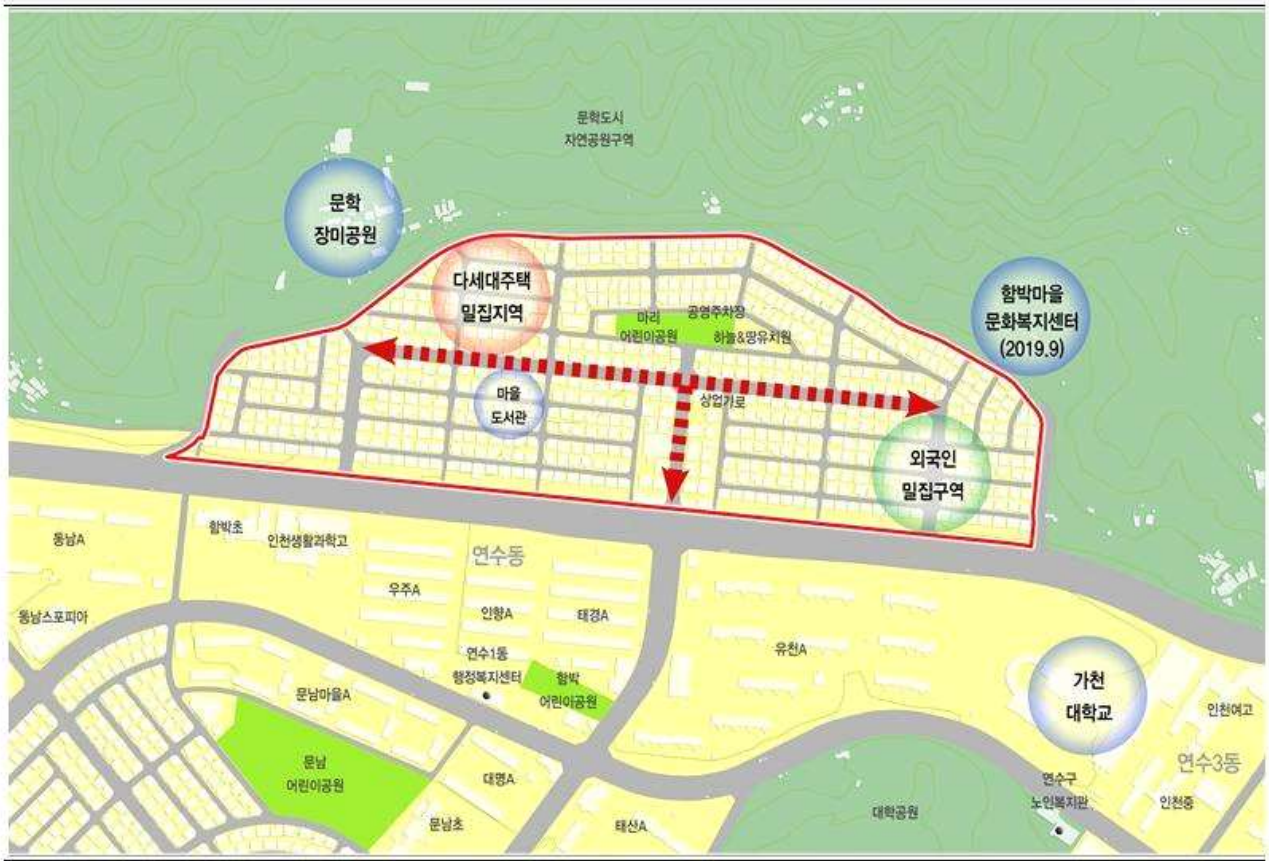

재생방향	**원주민과 다문화 이주민들의 화합과 치유의 공간 조성**
	· 다문화 음식 먹거리를 활용한 함박마을 근린상권 활성화 · 기초인프라(주차장 등) 확충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 CEPTED디자인 등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범죄예방 안전마을환경 조성 · 다문화 이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화합과 치유의 공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C4.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공동체 활성화형)
행정구역	남동구 남촌도림동
규모	215,853㎡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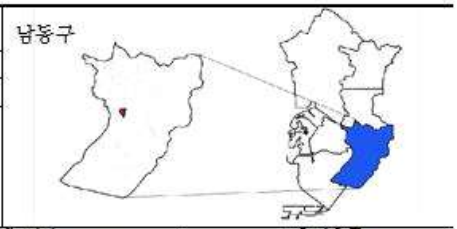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남촌도림동	X	-2.6	O	X	-1.5	X	X	49.3
	※ 집계구 기준 법적기준 충족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남촌도림동	4.4	10.0	74.8	14.0	0.8	4.4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종사자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남촌도림동	19.9	-2.3	78.8	49.0	15.7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24.2%(9,379명 → 7,108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4.1%(271개소 → 282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81.7%(건축물 2,135개 중 1,744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기존근린상권(골목경제)활성화-생활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
	· 지역내 빈집, 빈점포, 공휴지 활용을 통한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 기존 근린상권(행정복지센터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인프라 구축 · 청년 창업지원 발굴 및 마을기업(협동조합 설립) 유치를 통한 마을일자리 창출 · 지역 특성을 살린 마을랜드마크 조성 및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D2. 보행친화마을 잇플레이스(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공동체 활성화형)
행정구역	미추홀구 도화2,3동
규모	134,822㎡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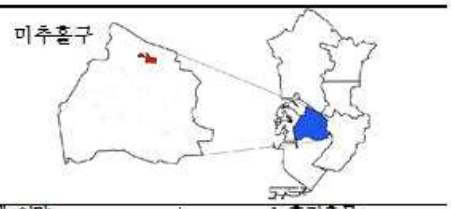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도화2·3동	X	-8.3	O	X	-4.0	X	O	71.9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도화2·3동	-21.7	14.3	74.3	20.2	37.5	7.8
	구분	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도화2·3동	12.9	17.9	20.4	-24.6	38.6	4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24.7% (9,596명 → 7,225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21.0% (357개소 → 282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73.5% (건축물 2,042개 중 1,500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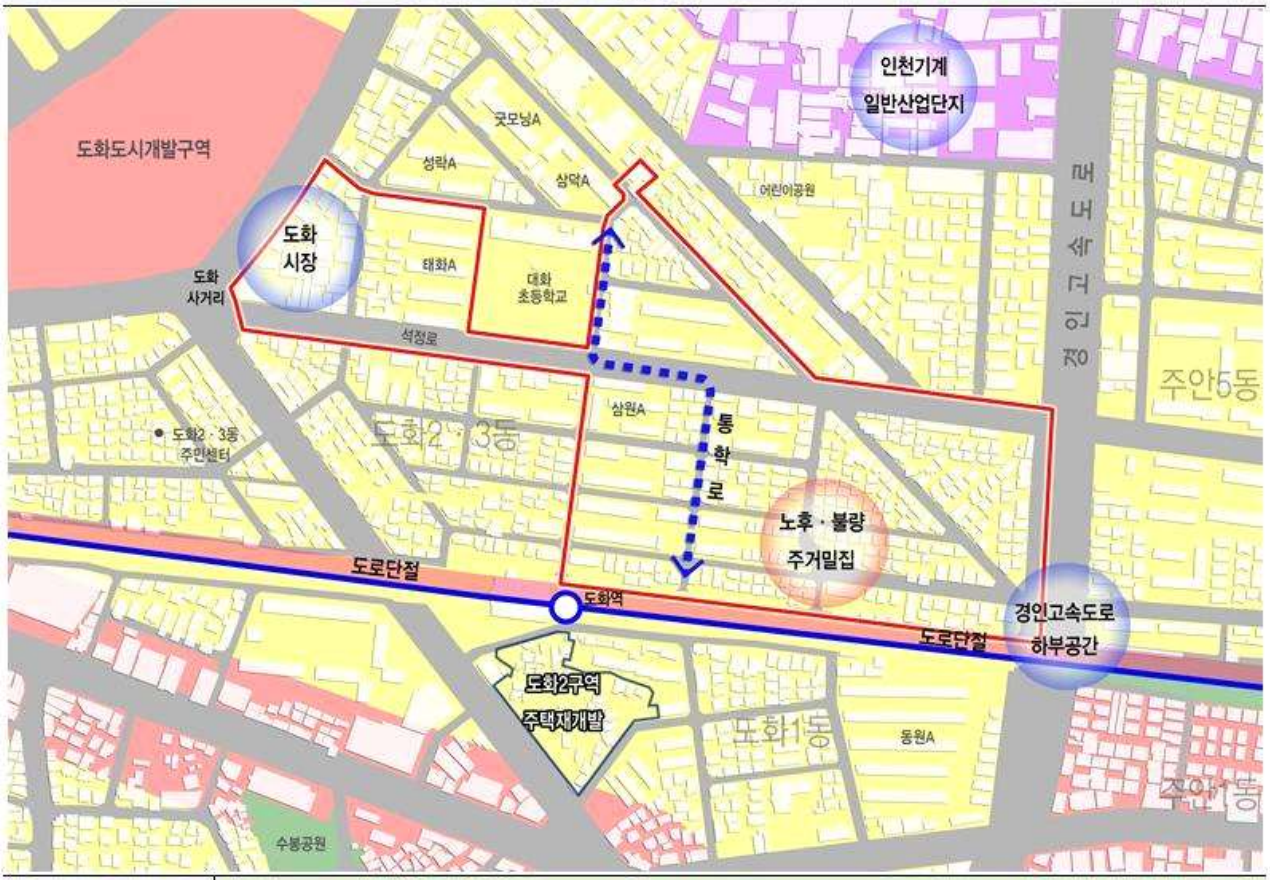

재생방향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매력적인 마을 조성 및 공동체활성화를 통한 마을 재생
	·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거점 커뮤니티 강화 · 안전한 통학로, 범죄·생활 안전 인프라확충 및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통한 재생 · 주변 마을과의 소통 및 도화시장 활성화 사업 등

D3. 장사래마을(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공동체 활성화형)								
행정구역	미추홀구 숭의2동								
규모	57,459㎡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숭의2동	O	-27.1	X	X	-2.7	X	O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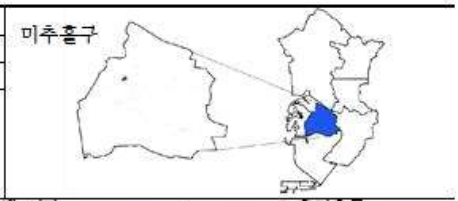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숭의2동	9.9	18.3	67.4	26.4	24.0	18.2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숭의2동	36.1	28.3	17.7	12.2	-4.7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22.8% (1,988명 → 1,534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17.4% (132개소 → 109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57.6% (건축물 172개 중 99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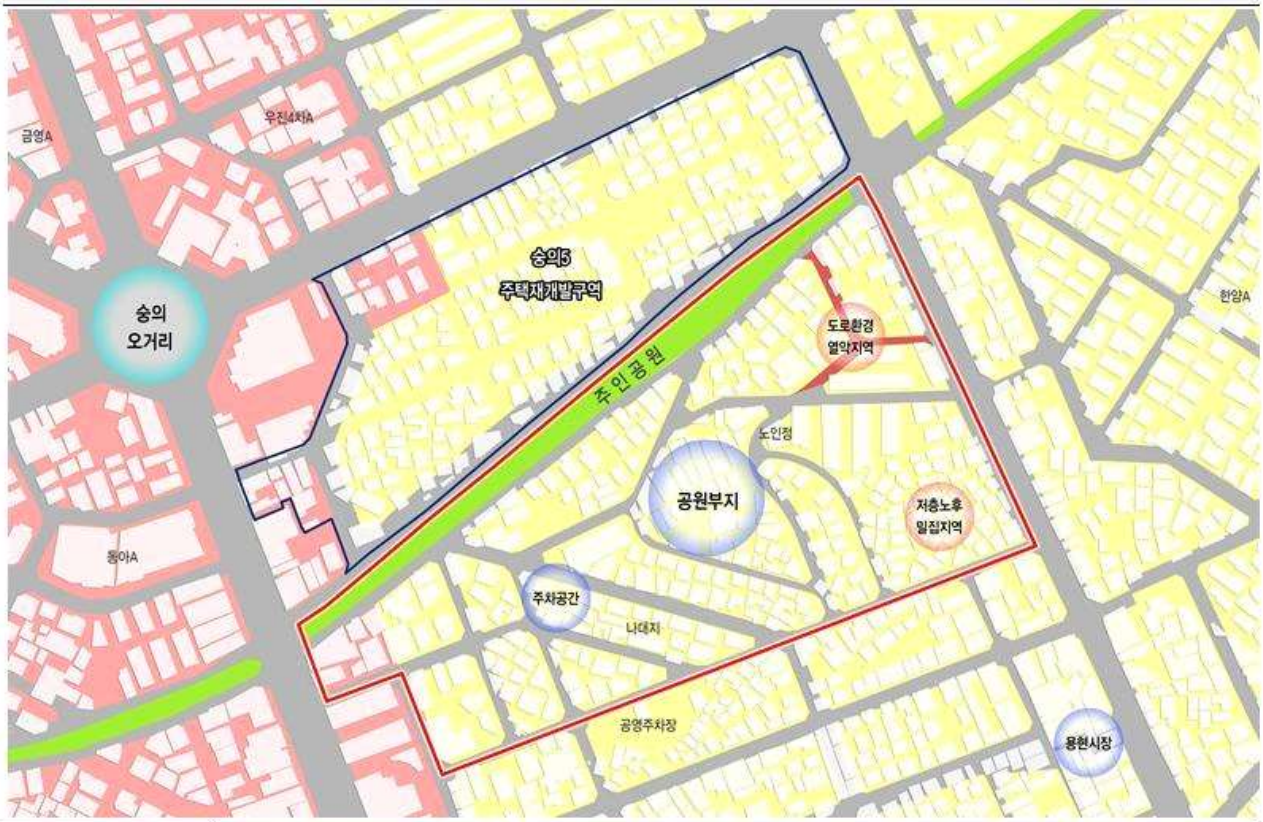

재생방향	**함께하는 이웃,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주민이 만족하고 걱정없는 생활을 위한 도시재생**
	· 도시재생 과정을 통한 지역역량 강화 ·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활기 넘치는 마을 만들기 · 임대주택, 공폐가·무허가주택 정비 등을 통한 주거재생의 실현 ·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강화

D4. 안골마을(신규)

유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공동체 활성화형)
행정구역	연수구 청학동
규모	105,849㎡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연수구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청학동	X	-15.2	O	X	-1.6	X	O	68.2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청학동	-9.7	10.6	76.5	13.9	6.9	3.0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청학동	24.4	44.0	17.2	-12.8	-1.4	6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18.6% (2,791명 → 2,273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20.8% (53개소 → 42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80.5% (건축물 640개 중 515개 노후)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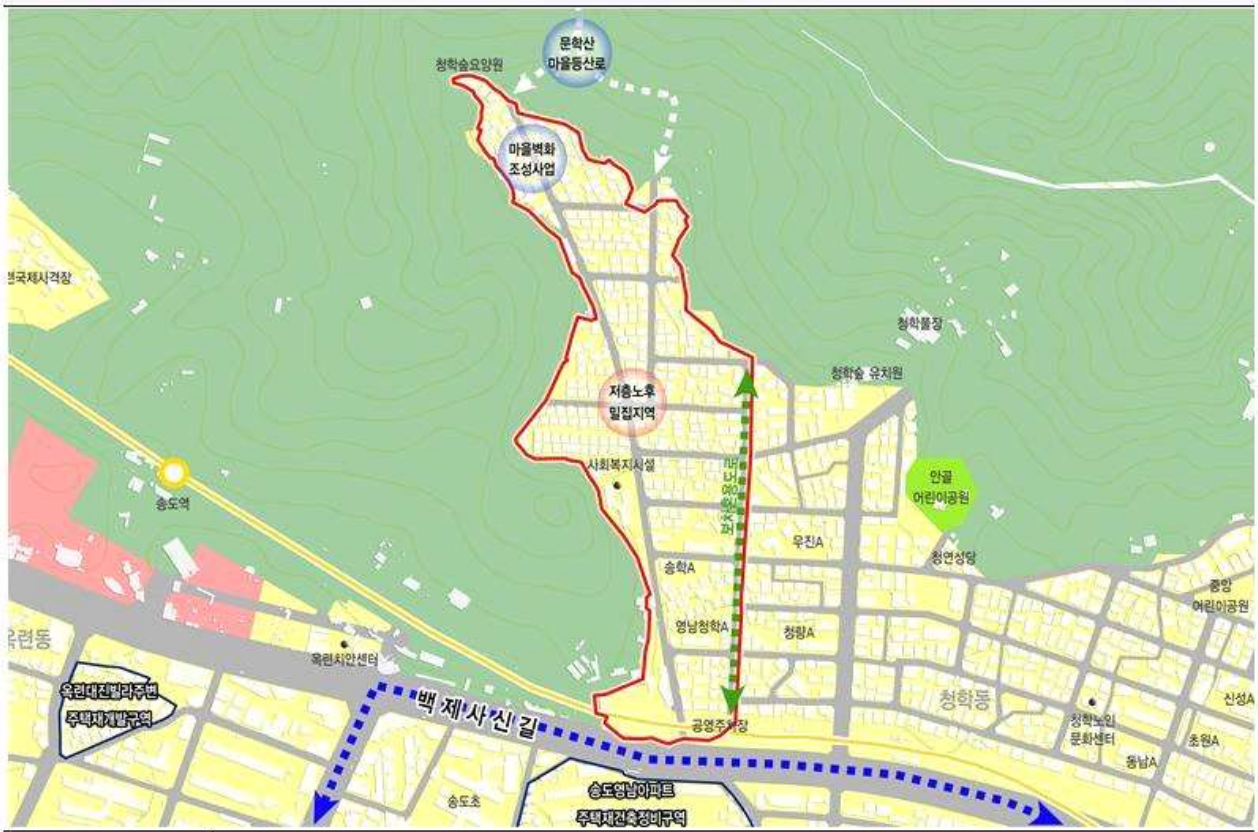

재생방향	역사, 문화자원 활용-생활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
	· 사회적 약자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가로환경 개선 · 주민공동체 강화를 위한 거점 커뮤니티 공간 확보 · 마을특색사업(백제사신길 등과 연계한 역사마을 조성 등)을 통한 마을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초생활인프라(주차장 등) 확충 사업

D6. 가재울마을 주변(변경)

유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행정구역	서구 가좌4동
규모	99,719㎡
추진경과	2019년 활성화계획 수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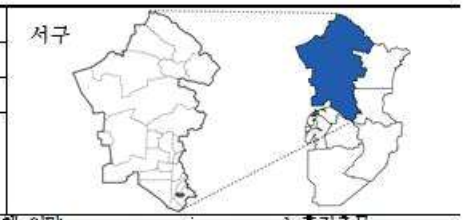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가좌4동	O	-37.6	O	X	-3.9	X	O	81.6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가좌4동	-16.5	23.3	8.5	26.9	77	78.9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가좌4동	33.9	39.4	54.6	13.7	-34.2	5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18.3% (4,556명 → 3,724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6.6% (182개소 → 170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58.8% (건축물 359개 중 211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생활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재생
	·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2016년 개통예정)과 완충녹지공원, 가좌울공원, 근린상업가로를 연계한 테마거리 조성 · 인접한 가좌주공2차A 재건축사업(진행중)과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 · 국민안전처 안전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D7. 서구 상생마을(변경)

유형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공동체활성화형)
행정구역	서구 석남1동
규모	약 100,000㎡
추진경과	· 2017년 선도지역 선정사업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110호(2018.08.20.)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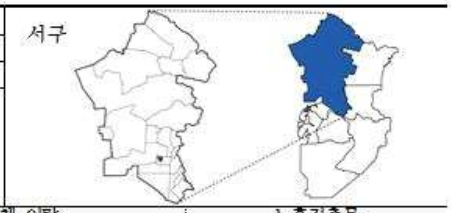

활성화지역지정 법적기준 충족여부	구분	인구 감소			사업체 이탈			노후건축물	
		20%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5%이상감소		3년연속감소	20년이상 건축물 50%이상	
	석남1동	O	-58.2	O	O	-14.5	X	O	79.2

쇠퇴지표별 쇠퇴진단 · 복합쇠퇴지수 순위	구분	10년간 인구변화율(%)	고령화율(%)	경제활동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30년이상 노후건축물비율(%)	신규주택비율(%)
	석남1동	-0.5	11.2	75.6	14.7	13.6	4.0
	구분	총종사자 증감률(%)	제조업종사자 증감률(%)	도소매업 종사자증감률(%)	음식숙박업 종사자증감률(%)	고차서비스 종사자 증감률(%)	복합쇠퇴지수 쇠퇴등급
	석남1동	14.4	-26.1	4.1	14.5	-1.0	4

집계구기준 쇠퇴진단		
	인구변화율(10년간)	-11.3% (4,423명 → 3,922명)
	사업체변화율(10년간)	-11.7% (179개소 → 158개소)
	노후건축물 비율(20년 이상)	43.8% (건축물 858개 중 376개 노후)

현황도

재생방향	민-관-주민 협력형 주거지 재생 모델
	· 기업(SK인천석유화학)과 협력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SK사유지 내 주민지원시설 마련 협의) · 녹지공간과 지역상권 특성을 반영한 특화상권 조성 및 상인 역량 강화 · 집수리, 골목길 정비, 주차장 확보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재생 · 주민 커뮤니티의 회복을 통한 자력형 재생 추진

■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의 적용은 시 재정여건 및 군·구 또는 주민의 추진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전략계획 재정비시 활성화지역별 추진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함

· 특히, 군·구 차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충분한 추진여건을 마련하고,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우선순위		유형	군구	활성화지역명
1순위 (5개소)	2016년 국토부 일반지역 공모 선정	경제기반형	인천시	인천 개항창조도시
		일반형	강화군	강화군청 주변
	2017년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 공모 선정	중심시가지형	부평구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일반근린형	동구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주거지지원형	서구	서구 상생마을
2순위 (9개소)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정지역 (뉴딜공모 예정지역)	중심시가지형	미추홀구	용현 Triple C
		중심시가지형	서구	가좌·십정 공업지역 스마트재생
		일반근린형	미추홀구	다시날자! "비룡공감 2080"
		일반근린형	연수구	함박마을
		일반근린형	남동구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주거지지원형	미추홀구	장사래마을
		주거지지원형	미추홀구	보행친화마을_잇플레이스
		주거지지원형	연수구	안골마을
		주거지지원형	서구	가재울마을 주변
3순위 (5개소)	2020년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예정지역	중심시가지	중구	연안부두어시장 주변
		일반근린형	남동구	만부구역 주변
		일반근린형	부평구	부평아울렛 주변
		일반근린형	강화군	교동 대룡시장 주변
		주거지지원형	중구	신흥동 일원

2.3. 실행주체

■ 도시재생 추진체계

· 심의조직(지방도시재생위원회), 행정조직(도시재생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시행조직(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으로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주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과 민간(주민) 사이의 중간지원 조직으로 가장 핵심적인 조직

· 인천시는 행정과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향후 군·구단위 기초지원센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공기업 위탁형'(인천도시공사) 광역지원센터를 조직함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교육기획팀(3인), 정책지원팀(4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재생전담조직

· 인천시는 201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 하 도시재생건설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2.4. 재원조달방안

■ 기본방향

· 도시재생뉴딜 신청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국비/집행기간, 지방비 매칭비율을 적용함

· 사업유형별 한도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사업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협의

(단위: 억원)

유형	국비지원	집행기간	지방비 대응투자	국비,지방비 총계	비고
경제기반형	250	6년	인천광역시 지방비 매칭비율 50%	500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은 지역마다 상이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50%)
중심시가지형	150	5년		300	
일반근린형	100	4년		200	
주거지지원형	100	4년		200	

■ 소요예산 추정

· 도시재생뉴딜신청사이드라인 상 국비지원(마중물사업)에 관한 내용에 한함
: 민간투자, 공기업투자, 지자체사업, 중앙부처협업사업 등 제외

· 시 본청 추진 사업은 시 일괄, 지방비 중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50:50으로 가정

· 활성화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은 계획 상 소요예산을 반영

· 국비의 경우 당초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활성화지역 12개소 중 6개소(50%)만 국비지원 대상 지역으로 산정하였으며, 변경(안)의 경우 모두 국비지원(뉴딜사업) 대상으로 산정

(단위: 억원)

유형		계		국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2,000	4,320	600	2,160	1,400	2,160	825	1,320	575	840
도시경제기반형		500	360	250	180	250	180	250	180	0	0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800	1,260	200	630	650	630	300	465	300	165
	일반형	700	2,700	150	1,350	550	1,350	275	675	275	675

인천광역시공고제 2019-44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유니온환경안전

2) 대 표 자 : 유찬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 라이온스밸리 C동 1206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15호

6) 등 록 일 자 : 2019. 2.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 변경(말소)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2011-0-인천광역시-34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72(금곡동)	최미경	2011. 8. 5.	석면피해 예방활동	환경정책과	말소	말소일 2017.2.27.

2019년 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우편 발송하였으나 처분당사자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9년 3월 4일 ~ 3월 19일(16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경인사랑나눔봉사회(해오름청소년봉사단) 대표자 박*화</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42, 유림빌딩 3층(학익동)</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 ·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관리인) 등의 확인 불가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5">청문실시</td><td>기관명</td><td>인천광역시</td><td>부서명</td><td>자치행정과</td><td>담당자</td><td>한점희</td></tr>
<tr><td>주소</td><td colspan="3">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305호(구월동)</td><td>전화번호</td><td>032-440-2443</td></tr>
<tr><td>일시</td><td colspan="3">2019년 4월 3일(수) 16시 부터 17시 까지(1시간)</td><td>장소</td><td>자치행정과</td></tr>
<tr><td rowspan="2">주재자</td><td>소속 및 직위</td><td colspan="4">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td></tr>
<tr><td>성명</td><td colspan="4">고창식</td></tr>
</table>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자치행정과(032-440-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4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인앤인 컨피던스	윤식	2019.2.28.	인천190004	300,000천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42, 1511호(주안동, 주안웰가)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변경사항 : 단체명칭·대표자·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구분	등록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당초	제2010-0-인천광역사-30호	(사)새우리누리평화운동	노진민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324번지 1호	○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 평화운동 등	
변경	상 동	**(사) 우리누리 평화운동**	**김영애 정익현**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31-3**	상 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 - 453호

2019년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시행 공고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3.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사업 신청자격

○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유형

○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업

<사업예시>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성평등 실천 커뮤니티 지원 및 실천 캠페인
- 남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성평등 의식 개선 사업
- 기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문화확산 위한 사업

○ 양성평등주간 관련사업

<사업예시>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연계 프로그램
- 토론 및 강의,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발표 전시회 등

- 기타 양성평등주간과 관련된 사업

※ 주요행사는 양성평등주간(7.1. ~ 7.7.) 내 실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예시>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방안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
-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
- 여성단체 역량강화 제고 프로그램
-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 관련 사업

3. 지원규모

○ 소요예산: 120백만원

- 보조금 지원 최고상한 금액제한 없음
- 단체별 사업 수 제한 없음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기준, 10% 이상 자부담 의무화

※ 적정사업이 없는 경우 예산규모 범위 내라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업추진기간: ’19년 4월 ~ ‘19년 11월

5.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1부

※ 정관 또는 회칙, 단체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추진계획서 제출

라.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2019.3.4.(월) ~ 3.22.(금)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 4층 408호 ☏ 440-2863)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19.3.12.(화) 16:00

나. 장　　소: 인천시청 지하 어학실

다. 내　　용:

- 지원유형, 사업내용,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 기타 유의사항 등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보조금 지원 제외사업 및 제외대상 >

○ 단체에서 추진코자 하는 지원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수혜가 특정 군·구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해당 군·구 보조금 활용)
- 사업범위가 1개 군·구로 한정된 단체(군·구지회 등)
- 동일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 군·구 또는 기금 등 市의 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의 자본적 구축 성격의 사업
- 단체 설립취지 및 정관(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018년도 지원사업 추진결과 공공성·책임성이 결여된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다.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2019. 4월 초(예정)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　　법: 인천광여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마. 선정된 단체는 회계담당자 교육 등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출하여야 합니다

바. 2019년도 공모 지원사업 신청서식: 붙임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전화 440-2863)으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공고 제2019-1호

유 물 구 입 공 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9년도 유물구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1. 구입대상 유물

주제	대상유물
상업/무역	○ 인천지역 개항 ~현대 상점(백화점, 시장) 집기, 광고, 문서, 상품 등 ○ 인천지역 개항~현대 인천 은행 관련 자료 - 제1, 18, 58, 천일은행, 인천은행(경기은행) 등 ○ 양행 및 화상 관련 자료 - 세창양행, 타운센트, 이화양행, 광창양행 등 상품, 광고 등 - 동순태, 동순동, 덕흥호, 쌍성태 등 화상(華商) 자료 ○ 전환국, 미두취인소, 객주, 신상협회 등 관련 자료 ○ 인천 해관(세관) 관세, 진구(출구)보단, 인지 등 관련 자료
산업/공단	○ 일제강점기 인천지역 군수 산업 자료 - 조병창, 부평국산자동차, 디젤자동차주식회사, 조선기계제작소 등 ○ 주안, 남동, 부평공단 조성 관련 자료 및 입주사 자료 - 문서, 사진, 생산품, 광고, 회사물품 등 ○ 염전, 방직, 양조 관련 자료
도시기반	○ 개항~현대 간척 관련 자료 - 해안매립 및 송도, 청라, 영종 조성관련 자료 ○ 일제강점기~현대 인천 토지구획 및 경인시가지 계획 관련 자료 ○ 개항~현대 인천항, 경인선, 지하철, 고속도로, 상하수도, 전화, 우편, 전기 관련 자료 ○ 부영주택, 영단주택, 아파트 건설 광고, 문서, 도면, 생활용품, 사진 등
생활문화	○ 일제강점기~현재 인천 지역 관광관련 자료

	- 송도유원지, 월미도, 호텔, 여관 등 숙박업 관련자료 ○ 개항~현대 극장, 우리예술관 관련자료 ○ 인천지역 시장 관련 자료 - 양키시장, 중앙시장, 신포시장 등
조선시대 여성 생활사	○ 조선~개항기 여성 생활사 자료 - 화장품, 장신구, 소품, 자수보 등 수공예품, 침선도구 등 생활용품
	기타 인천 관련 자료

※ 인천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구입 가능

2. **참가자격** : 개인소장가(종중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 **서류접수기간** : 2019. 3. 11.(월) ~ 3. 15.(금)

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youmool@korea.kr
-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유물구입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942)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신청서류**
가. 유물매도신청서 1부
나.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다. 매도신청 유물사진 1매(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부착 또는 첨부)
※ 유물매도신청서와 매도신청 유물명세서는 박물관 홈페이지 (http://icmuseum.incheon.go.kr)-공지사항-공고문의 첨부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유물 1건당 여러 점일 경우 대표사진 이외에 추가사진 접수
※ **사진은 반드시 이미지화일로 제출**(우편접수 경우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6. 유물접수

가. 대　　상 : 2차 실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개별 통지)

나. 접수기간 : 2019. 4.10.(수) ~ 4.12.(금) ※ 변동 가능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

7. 유물접수 제출서류

가. 매도신청유물

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

다.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통

라. 법인, 단체일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마. 대리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

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사.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 가능)

8. 구입유물선정 및 가격평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9. 구입결정

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평가심의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나. 심의·평가 후 일정기간 인터넷 공개 후 구입

10. 소유권이전

유물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가.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우선 구입함

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구입여부는 심의 결과 후 개별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매도신청 및 유물 접수·반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마. 유물구입가격은 유물평가심의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바.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함

사. **일 정**

내용	일정	비고
유물구입공고	2.26.~3.15.	
매도신청접수	3.11.~3.15.	
유물접수	4월 초	
평가결과 통보 및 매매협의	5월 말	
매도계약 및 유물반환	6월 초순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032-440-6742)로 문의 바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56호

공 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조직이 2019. 3. 1.자로 개편되어 명칭 변경된 부서의 회계직인을 신규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 : 2019. 3. 1.

【신규회계관인】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정책기획과, 예산복지과, 안전총괄과, 학교설립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마을교육지원단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정책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복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안전총괄과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학교설립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년월일 : 2019. 2. 28.

【폐기회계관인】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학교설립기획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정책기획조정관일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학교설립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2019. 2. 28.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9-15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등급제 개편('19.7.1.「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 사항 및 '19년 시행「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수준의 세제지원을 유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9.7.1「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으로 '시각장애 4급'은 폐지되고 '5~6급'과 함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될 예정임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종전 감면대상자(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현행수준으로 지원함(안 제2조)

나. 종교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일정 감면율 내에서 각 조례로 취득세 감면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년 시행 법 개정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20년까지만 연장('21년부터 법으로 감면율 규정)되었으므로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2020.12.31.)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대상을 개인주소지분 균등분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19년 시행 「지방세법」제77조에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비과세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 제8조제3호의 만 19세 미만 감면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제출부서 : 세정담당관, 전화(032-440-2544), 팩스(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중 “대하여 법 제38조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를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균등분”을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적용되는 때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

현 행	개 정 안
	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

현 행	개 정 안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는 경감율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로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0분의 125를 경감 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	3. <삭제>
4.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생 략)	4.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8조(장애인의 범위) ○ 제78조(세율) □ 지방세법 ○ 제75조(납세의무자) ○ 제77조(비과세) ○ 제78조(세율) □ 민법 ○ 제4조(성년)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제5조(등록증 서식 등) ○ 제6조(장애등급 조정) ○ 제7조(장애상태 확인) “내용 별첨”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③ (생 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 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 2019.7.1.)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77조(비과세)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생 략)

② (생 략)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일 : 2019.7.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일 : 2019.7.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 2019.7.1.)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증 서식 등) ① 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감면기간 세입감소분 추계 결과

- 조문 제2조('19.7.1～'22.6.30), 조문 제3조·제8조('19년～'20년)

(단위 : 백만원)

조 문	감면내용	감면추계	비 고
계		204.19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203.83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2020.12.31.일까지 취득세 1,000분의 125 경감	0.36	
제8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제3호(만19세 미만 감면) 삭제	0	

※ 2017년, 2018년 결산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3. 작 성 자 :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 정 상 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세입	시세 감소분	34,151	68,122	67,942	33,971	204,186
	소계	34,151	68,122	67,942	33,971	204,186
세출	△△△△ △△△△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34,151	68,122	67,942	33,971	204,186
	일반회계	34,151	68,122	67,942	33,971	204,186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참고)

조례 조문별 시세 세입감소분 추계(연간)

감면분야		조문	일몰 기한	연도별 비용 추계액 (천원)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204,186	34,151	68,122	67,942	33,971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2조	2022.06.30	203,826	33,971	67,942	67,942	33,971
2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3조	2020.12.31	360	180	180	-	-
3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 제3호 감면 삭제	8조	2020.12.31	0	0	0	-	-

※ 2017년, 2018년 결산 감면 연평균실적 기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4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예정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 별 가동률에 따라 적용 요율을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목록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추가)(안 제3조)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 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안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 오·폐수 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 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요율	0	0.2	0.4	0.6	8.0	1.0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 (생 략) 1. 2. (생 략) 3. (신 설)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생 략)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생 략) - (신 설) 2), 3) (생 략) 4) (신 설)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현행과 같음)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3) (현행과 같음)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td><td>

- 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적용처리시설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th></tr>
<tr><td>처리시설 가동률(%)</td><td>0 ~ 20 이하</td><td>20초과~ 40 이하</td><td>40초과 ~ 60 이하</td><td>60초과 ~ 80이하</td><td>80초과 ~90이하</td><td>90 초과</td></tr>
<tr><td>적립금 적용 요율</td><td>0</td><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
</table>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다.

</td></tr>
</table>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물환경보전법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담금은 100%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장 유 훈 수